

제261회 강서구의의회 정례회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전문위원 김 동 영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8 - 58
- 나. 제 안 자 : 김현희 의원 외 13명
- 다. 제안일자 : 2018년 10월 26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2. 제안이유

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,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,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의료비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축하용품 지원 중단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내용 개정
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 - 2018년도 7월부터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, 이와 중복되는 우리구 첫째아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자 관련 조항 삭제
 - 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내용 신설(첫째 10만원)

- 둘째아 이후 출산양육지원금 증액
(둘째 30만원→50만원, 셋째 50만원→100만원, 넷째 70만원→150만원, 다섯째 이상 100만원→200만원)

나.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 폐지 (안 제3조)

- (현행)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 → (변경)
신생아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

다. 다자녀가정 정의 및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신설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‘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’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, ‘다자녀가정의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 받을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’을 다자녀가정 의료비로 정의
-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정하며, 대상 자녀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 한정
- 의료비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시 발생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되,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가 목적인 의료비로 한정

라. 출산양육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 (안 제3조)

- 부모가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,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정함.

마. 의료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(안 제5조)

-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지원 중단

바.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예산반영(1,597백만원) 필요

(1,597백만원 = 1,334백만원(출산양육지원금)+263백만원(의료비))

※ 2018년 출산양육지원금 929백만원(출산축하용품 포함)

다. 합 의 : 여성가족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10. 29. ~ 11. 3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,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서울시의 조례 개정(2018. 5.)¹⁾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시행(2018. 7.)²⁾에 따라, 이와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
-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중단되는 첫째아이에게도 1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
-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하고,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(현행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)을 삭제하였음.
- 다자녀가정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, 다자녀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
- 기타 조례안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음.

1)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(출산축하용품 지원) ①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.

2) 출산축하용품 : 아기수유세트(유축기, 수유패드 등), 아기건강세트(체온계, 손톱가위 등), 아기외출세트(아기띠, 기저귀매트 등) 中 1세트

다. 종합의견

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·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「아동수당법」을 제정,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%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³⁾,
- 저출산 문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,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확대 및 지원액 인상, 다자녀가정 의료비 신설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3) 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)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,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.
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,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